From Complaint Procedure

(10) 본문에 첨부된 신고 절차와 공민법 제6장에 위반되는 차별대우 신고 민원은 www.tompkinscountyny.gov/itctc/civilright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From Complaint Form

민원 작성에 다른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락처는 서류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권 보장 공고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 (Ithaca-Tompkins County Transportation Council)

공민법 제6장에 의하여 보호받는 당신의 민권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은 1964년 공민법 제6장 (Title VI, Civil Rights Act of 1964), 1973년 재활법 504항 (Section 504,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을 준수하여, 인종, 민족, 국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와 운행을 평등하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공민법 제6장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로 인한 인권침해는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의 민권 보호 지침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신고를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Fernando de Aragon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화) (607) 274-5570

있습니다.

이메일) fdearagon@tompkins-co.org

상담 예약)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 사무소. 121 E. Court Street, Ithaca NY 14850 (월~금 9:00 am-4:00 pm)

자세한 사항은 www.tompkinscountyny.gov/itctc/civilrights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고 접수는 톰킨스 카운티 인권 사무소 (Tompkins County Office of Human Rights)나 미연방 교통 운영회 민권 사무소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톰킨스 카운티 인권 사무소:

전화) (607) 277-4080

주소) 120 W. Martin Luther King/State St., Ithaca, NY, 14850

미연방 교통 운영회 민권 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실 시에는 우편 머리에 아래 문구와 주소를 꼭 첨부하여 주십시오:

Attention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다른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타카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의 민권 업무 담당 Fernando de Aragon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위의 내용은

- 홈페이지 <u>www.tompkinscountyny.gov/itctc/</u>
-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의 Unified Planning Work Program과 Unified Operations Plan
-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 사무소의 입구
- 톰킨스 카운티 인권 사무소
- 이타카 톰킨스 카운티 대중교통 위원회 회의실

등에 공고되어 있습니다.